

# 미주인권재판소

## 1. 명칭 : 미주인권재판소

- Corte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

## 2. 설립 경위

- 1948. 5. 2.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(Declaración Americana de los Derechos y Deberes del Hombre) 발효
- 1948. 4. 30. 미주기구헌장(Carta de la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) 채택
- 1951. 12. 13. 미주기구헌장 발효
- 1960. 6. 29. 미주인권위원회 출범(첫 인권위원 선출)
- 1969. 11. 22. 미주인권재판소 설립 근거인 미주인권협약(Convención Americana sobre Derechos Humanos) 채택
- 1978. 7. 18. 미주인권협약 발효
- 1979. 5. 22. 미주인권재판소의 첫 번째 재판관 선출
- 1979. 9. 3. 미주인권재판소 코스타리카에 설립

## 3. 미주인권체제 특징

- 미주인권체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채택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함
- 실제적 규범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및 미주인권협약이며, 감독기관으로는 준사법적 정치기구인 미주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인 미주인권재판소를 두고 있음

- 미주인권위원회는 권고사항을 체약국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주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. 다만, 미주인권협약 당사국이며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음
-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, 영어,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임

#### 4. 미주인권협약 체약국(23개국)

- 아르헨티나, 바베이도스, 볼리비아,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도미니카 연방, 도미니카 공화국, 에콰도르, 그레나다, 과테말라, 아이티, 온두라스, 자메이카, 멕시코, 니카라과, 파나마, 파라과이, 페루, 수리남, 우루과이

#### 5. 미주인권재판소 구성

- 재판소장과 부소장 포함 총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
- 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선출되며, 임기는 2년으로 중임 가능함
- 재판관 선출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지고, 미주인권협약 체약국 절대 과반의 찬성을 얻는 자가 선출됨
- 같은 기간 동안 미주기구 회원국 당 한 명의 재판관만 재직할 수 있음
-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 가능
-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기존에 심리한 사건은 계속 담당함
- 재판관의 자격: 미주기구 회원국의 국민으로 인권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법률전문가이고, 국적국이나 재판관을 추천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최고사법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자
- 모든 재판관은 비상근으로 근무함
- 재판관은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음

## 6. 미주인권재판소 권한

### ○ 쟁송적 관할권(función jurisdiccional)

- 당사자적격은 미주인권협약 체결국과 미주인권위원회에게만 인정됨
-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<sup>1)</sup>
- 미주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 또는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협약당사국이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, 미주인권재판소 결정의 이행 여부를 감독함
-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구성한 조치나 상황의 시정을 요구하고, 피해자에게 공정한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
- 개인의 권리 및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사안이 극도로 중대하고 위급하며, 손해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할 경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 ○ 권고적 관할권(función consultiva)

- 미주기구 회원국 및 미주기구 기관에 대해 당사자적격 인정
- 미주인권협약 및 미주국가들이 가입한 인권관련 조약을 해석, 적용함

## 7. 심리 및 결정

- 의사정족수는 5인, 의결정족수는 출석 재판관의 과반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권을 가짐
- 표결은 재판관 연공서열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며, 연공서열이 동일할 경우 나이가 적은 자부터 투표함
- 변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심리는 비공개로 이루어짐
-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의 투표내역과 함께 공개됨
-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,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
- 협약당사국은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, 손해배상은 해당 국가의 국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 관한 국내 절차에 따라 집행함

---

1) 미주인권협약 체결국 중 도미니카 연방, 그레나다, 자메이카는 미주인권재판의 쟁송적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음.

- 결정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, 결정통지 이후 90일 이내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미주인권재판소가 해당 사항을 해석함

## 8. 연락처

- 주소 : Avenida 10, Calles 45 y 47, Los Yoses,  
San Pedro, San José,  
Costa Rica
- 전화번호 : 506 2527 1600
- 홈페이지 : <https://www.corteidh.or.cr/>

- ※ 출처 : 미주인권재판소 홈페이지  
미주기구 홈페이지  
미주인권협약  
미주인권재판소규정  
미주인권재판소절차규칙  
미주인권위원회절차규칙

(2022. 1. 작성)